

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○ 본 개정조례안은 2000. 2. 16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0. 2. 23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00. 2. 26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사유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을 폐지함.(안 제4조제3항)
-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5조, 안 제9조)
  - 폐지 : 기부채납의 적정여부, 관리계획의 적정여부 등.
  - 생략할 수 있는 경우
    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·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
    - 행정재산의 용도변경·폐지시 특별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등.
-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함. (안 제18,19조, 제24조, 제36조)
  -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⇒ 인정하는 공유재산
  - 제조업인 사업 또는 공장건설사업 ⇒ 사업
  - 공장용지내의 재산 ⇒ 사업장내의 재산
-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교육재산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연 8퍼센트에서 연5퍼센트로 인하함. (안 제21조제6호)
- 교육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기간연장, 사용요율(대부요율) 및 이자율

인하 (안 제21조의 2, 안 제22조제3항)

- 주택재개발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 교육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분할납부 및 이자율을 10년 이내 연 5퍼센트에서 20년 이내 연 5퍼센트로 하고,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도 20년 이내 연 5퍼센트로 함.(안 제21조의2제1호)
-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분납매각 후 당초 계약채결자로부터 매매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및 이자율(20년 연5퍼센트)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1조의2제3호)
-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(대부요율)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요율로 되어 있는 것을
  -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(대부요율)을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완화하고
  -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교육재산의 사용요율(대부요율) 산정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함. (안 제22조제3항)
-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최저 사용요율(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)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함. (안 제22조제6항)
-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대부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함. (안 제22조제7항)
- 공유재산을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출에 의하여 경쟁입찰하였으나,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감액조정할 수

<p>있도록 함. (안 제23조제2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토지의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견제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토록 함. (안 제25조제1호)</li> <li>○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있는 교육재산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연15퍼센트에서 연10퍼센트로 인하함.(안 제28조제1항)</li> <li>○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공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잠정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(부동산관리신탁, 부동산 처분신탁, 토지신탁)를 정함.(안 제31조의 2)</li> <li>○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,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제도의 준용범위(국유재산의 철의회신·지침·편람 등)를 명확히 함. (안 제42조)</li> </ul> <p>4.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('99. 1. 21 개정, '99. 4.22 시행) 및 동법시행령('99. 4.30)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</li> <li>○ 이는 교육부의 시·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('99. 9. 8)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을 정비하거나, 서울시와의 조례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,</li> <li>○ 또한 행정의 간소화, 규제 완화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불 때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,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</li> </ul> <p>5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법령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지방재정법 제73조제2항, 제88조</li> <li>-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제2항, 제83조의 2, 제84조제3항, 제92조, 제93조, 제95조제2항제8호, 제95조의2제1항, 제100조제2항제5호, 제100조제4항, 제100조의3제2호, 제102조의 4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6호</li> <li>-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</li> <li>-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</li> <li>-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</li> <li>-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</li> <li>-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</li> <li>-도시재개발법 제4조,제6조</li> <li>-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</li> <li>-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부 개정조례안 준칙 (1999. 9. 8 자)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(1999. 11. 15 개정)</li> <li>○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: 2000. 2. 16 원안가결</li> </ul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보상금은 신고인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, 지급기한은 교육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⑤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토지·건물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교육재산의 용도변경, 용도폐지(재산대장 가액 300만원 이상)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기타 교육재산에 관하여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 (이하"재산관리관"이라 한다)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⑧제5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</p>
---	--